

2007. 10.

# 條例案審查報告書

- [1] 충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[2] 충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

總務委員會

# 條例案審查報告書

## 1. 심사경과

조례안	제안일자	회부일자	상정일자	의결일자	제안설명
① 충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	2007.10.04	2007.10.04	2007.10.09	2007.10.09	총무과장
② 충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	"	"	"	"	종합민원실장

## 2. 제안설명요지

### 가. 충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## 1) 제안이유

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 
대체휴무가 없는 휴일 당직근무자의 상대적 불이익을  
해소하기 위해 당직수당을 차등 지급하고자 함

#### 2) 주요골자

##### 가) 당직수당의 차등지급 (2008. 1. 1일부터 시행)

- 숙직수당 3만원
- 토요일과 공휴일 일직 및 전날 숙직자 5만원

- 나) 공무원의 연가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육아휴직기간 포함 (안 제18조 제2항)
- 다) 공무원이 헌혈에 참가할 때 공가로 처리 (안 제22조 제9호)
- 라) 공무원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 14일 입양휴가 (안 제23조 제1항)
- 마) 임신 중인 공무원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·사산한 경우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유산·사산휴가를 주도록 함(안 제23조 제3항)
- 바) 경조사별 휴가 신설
- 자녀 결혼 : 1일
  -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 : 1일
  -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: 3일
  - 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탈상 : 1일

## 나. 충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

### 1) 제안이유

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

## 2) 주요골자

### 가) 도로명 변경 절차 및 고지, 고시방법(안 제3~5조)

- 시장이 활용도 및 편리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변경
- 해당 도로구간의 주소 사용자 1/5 이상이 변경신청,  
새주소위원회의 결정 후 다시 1/2 이상의 동의를 거쳐 변경

### 나)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와 다르게 건물번호판을 자체 제작·설치 하려는 경우 규격 등(안 제6~8조)

- 대로, 로에 접한 건축물은 가로·세로 각각 20센티미터 이상,  
면적은 1,000제곱센티미터 이상
- 길에 접한 건축물은 가로·세로 각각 15센티미터 이상,  
면적은 500센티미터 이상

### 다)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시설 설치 (안 제9~10조)

- 도시개발사업자가 준공일 90일 전까지 도로명주소 신청  
⇒ 50일 이내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등 결정통지
- ※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자가 비용부담

### 라)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의 구축(안 제11~14조)

- 도로명주소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함
- 시장은 도로명기본도를 작성 관리

### 마)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(안 제15~18조)

- 건물번호판은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점유자가 유지관리
- 도로명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기업  
또는 시설을 설치한 사업자 등에 위탁관리

### 바) 도로명시설을 이용한 광고(안 제19~21조)

- 도로명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해 이 시설을 이용한 광고를 할 경우 충주시새주소위원회에서 광고사업자 선정

사) 도로명주소의 사용촉진을 위한 각종 시책추진  
(안 제22~30조)

아) 도로명 부여, 변경, 유지관리, 위탁, 광고사업자 선정 등을 심의하기 위해 충주시새주소위원회 설치  
(안 제24조~제31조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#### 가. 충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본 개정조례안은 시 본청 및 사업소, 읍면동사무소의 당직근무수당과 2006. 11. 1 개정된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의 변동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임.

##### 검토결과

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자녀의 양육 및 입양 등에 따른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.

#### 나. 충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

- 본 제정 조례안은 도로명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등을 위해 「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」 및

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정하려는 것임.

도로명은 2004년 9월 28일 이미 고시되었고,  
이 도로명으로 2008년까지 시설물을 설치하게 되며  
오는 2012년에는 새주소를 전면사용하게 될 예정임.

○ 본 조례안 검토결과

상위법에 위임된 사항에 대해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 
사업시행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제정되어야 할 조례이며,

조문의 형식, 내용 등에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#### 4. 질의 · 답변 요지

##### 가. 충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▶질의 : 처의 삼촌 사망 시 3일간의 특별휴가를 지급하는 것은 시민들의 입장에서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 아닌가?

○답변 : 현실을 감안하여 볼 때 실질적으로 3일간 장례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고, 직원 개인 사정에 따라 3일 내에서 조정될 것이라 사료됨

▶질의 : 행정자치부의 표준안 외에 특별휴가에 관한 부분은 연가로 처리하는 것이 맞지 않나?

○답변 : 도내 타시군에 비해 충주시의 특별휴가일수가 적음

## **나. 충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**

▶ 질의 : 도로명 변경절차가 너무 쉽게 되어있는 것 아닌가?

○ 답변 : 변경의견이 접수 되었더라도 새주소위원회의 의결을 후 주소 사용자의 2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되므로 쉬운 것은 아니라 판단됨

▶ 질의 : 주민의 요구에 따른 도로명 변경 시 건물번호판 제작비는 누가 부담하는가?

○ 답변 : 관리자인 주민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망설되거나 회손된 경우 외에는 관리자가 부담할 사항임

▶ 질의 : 지역에 관련된 지명이 도로명에 반영되어야 할 것임

○ 답변 :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음

## **5. 심사결과**

가. 충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: 수정가결

- 별표3 수정(별지참조)

나. 충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: 원안가결

## **6. 붙임**

가. 충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1부.

나. 충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1부. 끝.

## 충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충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별표 3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사망	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	5
	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·외조부모	3
	자녀, 그 자녀의 배우자	3
	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	2
	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	2

〈수정안대비표〉

[별표 3]

### 경조사별 휴가일수표(제23조제1항 관련)

개정안			수정안		
구분	대상	일수	구분	대상	일수
결혼	(생략)		결혼	(개정안과 같음)	
출산	(생략)		출산	(개정안과 같음)	
입양	(생략)		입양	(개정안과 같음)	
사망	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	5	사망	(개정안과 같음)	
	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·외조부모	3		(개정안과 같음)	
	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	3		(개정안과 같음)	
	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	3		(개정안과 같음)	2
	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	3		(개정안과 같음)	2
탈상	(생략)		탈상	(개정안과 같음)	
<비고> (생략)			<비고> (개정안과 같음)		